

자율 균형 미래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경기도교육청

채권 관리 업무 편람

개정판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 ✓ 「경기도교육청 채권 관리 업무 편람(개정)」은 2021년에 배포한 「경기도교육청 채권 관리 업무 편람」에 채권 관련 법령 등의 개정내용 및 채권업무 컨설팅 일부 사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 채권 관리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민사채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채권”의 징수에 관하는 「행정절차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만, 관련 법령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법령 조문만으로는 실무 적용에 낮설 수 있으므로, 채권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자 기준”으로 작성한 참고자료입니다.
- ✓ 따라서, 채권 업무 추진 시에는 관련 법령·규정 또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

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관련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확보 및 유지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주로 “거래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또는 “처분대상자의 법령 위반”에 의하여 발생하며, 채권의 실현은 징수 정의(正義)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미수납 채권은 약 1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채권의 실현은 “징수 정의”의 실현이라는 추상적인 목표 외에도, 소중한 세입재원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관리하여야 할 경기도교육청의 잠재적 자산입니다.

이에, 2021년에 교육 현장에서 채권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채권 업무 편람”을 제작하게 되었고, 2022년에 기존 발행된 “채권 업무 편람”에 채권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컨설팅 중 발견된 일부 사례 등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발행된 채권 업무 편람 “초판”에서는 채권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민사채권” 및 “세외수입채권”)와 이에 따른 회수 법령 및 회수 절차 등 안내를 통하여 업무담당자가 낯선 업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 업무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채권 관리 사례집”을 수록하여, 채권의 회수방법에 따른 각종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처음 업무를 접하는 담당자들도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발행한 채권 업무 편람 “개정판”은 기존 발행된 “초판”의 수록 내용 중 현장 업무 담당자가 혼동되기 쉬운 내용에 대한 관련 판례 등을 추가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편람 내용 중 관련 법령의 개정 사유 등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으며, 2022년 채권 업무 컨설팅 중 받은 다수의 질의 및 현장 사례 등을 활용하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채권 업무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 교육 현장의 채권 업무담당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채권 업무 편람(개정판)”이 채권 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12.31.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1	• 채권 개설 /1	
	1. 채권의 정의	3
	2. 채권의 소멸시효	5
2	•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 /11	
	1. 개요	13
	2. 회수 절차	15
	3. 강제집행 청구 절차	17
	4. 채권의 유지	20
	별첨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 실무	21
3	• 처분에 의한 채권 /49	
	1. 개요	51
	2. 회수 절차	53
	3. 강제집행 절차	56
	4. 강제집행 불능 채권의 유지: 소멸시효 중단	59
	별첨 처분에 의한 채권 실무	61
4	• 채권 관리 사례 /85	
	1.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 관리사례	87
	2. “처분에 의한 채권” 관리사례	91
	3. 기타 특이사례	95



경기도교육청
채권 관리 업무 편람

1

채권 개설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 채권의 정의

□ 개념

- 「지방재정법」제2조(정의)상,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 종류

- ▶ 채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그 회수 방법이 상이한 바, 그에 따른 분류이며, 강학상 분류가 아님에 유의할 것

🔌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민사채권)	
▶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은 대등한 거래관계* 또는 법원의 결정·판결을 통해 확정됨. * 거래관계에서 실현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판결을 통해 확정	
예 시	▶ 집행권원이 부여된 채권
	– 소송비용, 소송승소금, 지급명령결정에 따라 확정된 채권
	▶ 집행권원을 구하여야 하는 채권
	– 임대료 채권, 부당이득 채권 등
	▶ 수업료 채권

🔌 처분에 의한 채권(세외수입채권)	
▶ 처분에 의한 채권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처분”*하는 형태로 발생함. * 인사위원회의 징계부가금 처분, 행정청의 과태료·이행강제금·변상금 부과 처분 등	
예 시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부가금, 보조금 환수 등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부가금, 과태료, 변상금 등

○ [참고] 채권 종류에 따른 관리 방법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 (이하, 민사채권)	처분에 의한 채권 (이하, 세외수입채권)
개요	징수사유의 발생	▶ 사법상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소송종결에 따른 소송승소금 및 소송비용 등	▶ 행정청의 금전 제재·부과 처분과 납입의 통지
	집행권원	▶ 법원의 판결문(재판, 결정 등)	▶ 행정청의 적법한 처분
	징수방법	▶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따라 징수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예시	▶ 소송비용액, 급여채권 등	▶ 제재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징계부가금, 변상금 등 ▶ 기타: 대부료 등
알림	고지·독촉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바에 따름. - 고지방법(등기), 기일(15일 이내 등)	▶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름 - 고지, 독촉의 기한·방법은 개별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처분 사실 등 고지 시, 「행정절차법」상 절차 준수 확인 필요
강제 집행	채무자(체납자) 행방 조사	▶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름 - 집행권원 및 강제집행 신청 서류 제시	▶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름 - 주민센터에 조회 요청(공무상 필요)
	재산조사	▶ 법원에 청구하여 실시 ▶ 재산명시, 재산조회 - (보완) 사실조회신청 등	▶ 행정청이 조사 ▶ (의뢰)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및 차량 조회 요청 ▶ (직접) 기관 보유 정보 활용 또는 질문·조사권* 행사 등 * 「지방세징수법」제36조
	채권 확보	▶ 법원에 청구 -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 촉탁에 따른 압류 - 토지(→ 등기소), 차량(→지자체) 등 ▶ 직접 압류(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 금융재산, 급여채권 등
비고		▶ 채권 발생 후, 6개월 이상 미상환 시 또는 재산명시 미이행으로 감치처분 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실시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담당 부서에 조세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재산정보 확인



2 채권의 소멸시효

□ 소멸시효

-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

*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한”이 상이(相異)하며, 채권의 회수 등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할 경우, “소멸시효 기한”을 중단·연장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관리함.

□ 소멸시효 기한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지방재정법」제82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예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5조) - 법원의 결정·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채권	10년*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 (학원) 과태료 등	5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4조) - 수업료	1년

* (주의) “소송비용결정”에 의해 확정된 경우의 소멸시효 기간이며,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판례] 대법원 2019마6152: 소송비용 확정

(판결요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 (중략) ...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재판 승소 후, 5년간 소송비용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소멸

□ 소멸시효의 기산

- 원칙: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제166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법원의 결정·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채권	법원의 집행권원 확정일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과태료 - (학원) 과태료 등	처분일자
단기소멸시효 - 수업료	부과일자

- 단, 제1차 독촉은 채권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제1차 독촉의 납부 기한” 부터 채권소멸시효를 기산함. (「지방재정법」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등)

[판례] 대법원 2006다1381, 약정금

(판결요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 (후략)
 → 즉, 납부 기한(이행 기간) 이후로 채권소멸시효를 기산함



□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 중단·정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정한 사항 준용(「지방재정법」제83조)
- [참고] 소멸시효 중단·정지
 - 중단: 일단 지나간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 소멸 시부터 새로 진행
 - 정지: 정지사유가 있기 전까지의 시효기간은 그대로 산입하고, 정지 이후부터 다시 진행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민법」제168조

청구	▶ 법원 등에 채권 확보를 위한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신청 등 - 단, 소송 또는 청구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 시효중단 효력 없음 ▶ (실무) 채권 존재 확인의 소(訴) 제기 - 채무자가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등 -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은 “민사소송”, 처분에 의한 채권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제기
압류	▶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박탈하는 강제집행 조치로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 압류 신청(법원) - 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 촉탁 ▶ (참고) 급여채권 등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때부터 소멸시효 기산
승인	▶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승인하는 행위 - 일부변제(수납),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확약서 등), 담보 제공 등

- 단, ‘세외수입채권’의 경우 개별법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채권의 종류(징계부가금, 변상금, 과태료 등)에 따라 관계 법령을 확인할 것

[참고] 주요 세외수입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정지 관련 규정

< 징계부가금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후략)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 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참고

대부료 등 공유재산 사용·수익 어가에 따른 채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원칙)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대법원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판례] 대법원 2013다207941, 건물명도

(판결요지)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즉, “처분에 의한 채권” 회수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 하며, 채권 소멸시효 임박 시, 재판상 청구로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 실무상, “세외수입채권”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함.

□ (예외) 예외에 일정한 기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일부 재판부에서 “변상금”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인용한 사례 등이 존재하여 현재 판례가 형성 중인 것으로 보이며, 업무 추진 시 참고할 것.

* 변상금 부과는 일종의 처분으로 명백히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나, 법원에서 이를 일종의 계약 건으로 보아 지급명령신청(민사상 청구)을 인용한 사례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9차738 변상금 및 연체료]

* “대부료”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대부계약의 성질을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아닌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보고 있어,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음. 해당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임.

[수원지방법원 2021나55647 대부료등 채권존재확인의 소]



참고

적용제외 채권

1 채권 개설

□ 정의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9조에서 정한 “적용제외” 채권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채권

□ 종류

투자채권	증권으로 된 채권으로서 공유재산에서 관리
금융채권	예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자금운영에서 관리 (예시: 이자수입 등)
보조금·기부금 채권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심이 불가한 채권 (예시: 부담금, 교부금, 기부금)
과태료 등 채권	제재적 성격이 강한 채권 (예시: 징계부가금,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등)

□ 비고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시, “적용제외 채권”에 해당하는 미수납액은 채권현재액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음.
 - 분기별 “미수납액 현황”집계 자료로 관리 중임.
- “적용제외”의 의미는 “채권현재액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분임채권관리관 및 분임징수관의 징수·수납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
 - 적용제외 채권 또한 법령 등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한 징수 의무 이행



경기도교육청
채권 관리 업무 편람

2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 개요

□ 정의

- 일정한 사법상(私法上) 청구권에 따라 이를 실현시키는 집행력을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에 따라 집행하는 채권
- 법원의 재판*(판결, 결정 등),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이 이에 해당함.
 - * 판결(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재판의 판결 등), 결정(소송비용액 결정, 지급명령 결정 등)

□ 특징

- (자력집행 불가) 사인(私人)·사법인(私法人)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형성한 채권으로, 행정청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실현할 수 없음.
 - * 채무자 재산의 조사·압류 시, 법원을 경유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처분으로써 실현할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 (집행권원 필요) 법원에 판결·결정을 청구하여 채권을 확정하였을 때,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으로서 채권 실현이 가능함.
 - *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소재 파악, 재산 조사, 압류 시,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채납처분으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부여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함.
- (통일된 회수절차)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은 「민법」, 「민사집행법」 등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므로, 채권의 관리가 간결하고 용이**함.
 - * 일단 집행권원이 부여된 채권은 “채무자 소재파악 - 재산 조사 - 압류 및 추심” 절차가 동일함.
 - ** “처분에 의한 채권”은 개별법에 따라 부과·고지하며,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보다 관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함.

□ 예시:

- 집행권원이 부여된 채권: 소송비용, 소송승소금, (지급명령이 확정된) 금전지급청구 등

- 법원의 결정(소송비용결정, 지급명령결정 등), 판결(금전지급청구 승소판결 등)에 따라 청구권이 확정된 채권
- 특징
 - (합의된 채권) 법령에 정한 쟁송에 의해 결정하며,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채권 발생 사실을 고지하므로 채무자가 인지하고 있음.
 - (집행가능한 채권)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 주소·재산의 조사가 가능하며,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

소송비용	▶ 경기도교육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중 승소사건 또는 상대방의 소송 취하로 인하여 승소 간주 종결된 사건 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결정된 채권
소송승소금	▶ 경기도교육청이 청구한 금전지급청구 소송에서, 재판을 통해 인용되어 발생하는 채권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	▶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결정하여 집행권원*이 부여된 채권 * 지급명령결정문(집행문 포함)

● 집행권원이 부여되지 않은 채권: 계약대금, 수업료 등

● 거래상대방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형성한 채권으로서, 계약·협약 등에 따른 금전지급청구권 ● 특징 - (집행권원이 부여되지 않은 채권) 법원에 재판 또는 결정을 구하지 않는 한, 쌍방간 합의를 통하여 회수하여야 함 - 지급명령신청 또는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집행권원 확보
--

급여 환수 채권	▶ 급여(퇴직수당 포함) 과오지급에 의하여 반환요구하여야 할 채권
수업료	▶ 학생의 교육에 대하여 교육기관의 반대급부로서의 채권
부당이득 채권	▶ 법률상 원인 없이 경기도교육청의 재산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 발생한 이익의 환수금

[판례] 대법원 2011다76402, 부당이득금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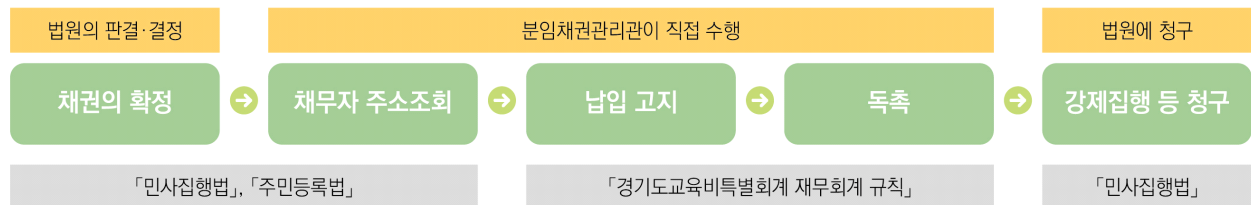
(판시사항)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舊 「국유재산법」제51조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토지무단점유 등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용료 내지 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 가능하다는 의미임.
(변상금 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사소송] 병과 기능)



2 채권의 회수 절차

□ 회수 절차



1단계 채권의 확정(→ 집행권원의 획득)

-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은 법원의 판결·결정에 따른 집행권원*의 부여로서 확정됨.
 - * 집행권원: 강제력으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증서
- 종류: 판결문(금전지급청구를 구하는 소송의 승소 판결 등), 결정문(소송비용결정, 지급명령결정 등)

집행권원 획득 절차

- * 업무 진행 중, 수반하여 획득하는 집행권원
 - ▶ **소송비용결정**: 「민사소송법」 제3장(제98조 내지 제110조)
 - 경기도교육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중 승소사건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인하여 승소 간주 종결된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결정
- * 청구에 의하여 획득하는 집행권원
 - ▶ **지급명령결정**: 「민사소송법」 제462조
 -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간이한 재판 절차
 - 채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 진행
 - [참고] 법정지연이자는 12%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 **판결문** - “금전지급청구의 소(訴)” 등을 통해 확정된 금전지급청구 권리: 「민사소송법」 제248조
 - 금전지급청구가 재판에서 인용된 경우, 판결문은 확정된 중국판결로서 집행권원에 해당함
 - 금전지급의 청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해당하며, “소송승소금”으로 분류하기도 함.

- [참고] 집행권원 분실 시, “집행문 부여 신청”

■ 집행권원(소송비용 결정문, 민사소송 판결문 및 집행문 등) 분실 시 조치사항

- ① (1단계) 집행문 부여 신청서* 작성
 - * [서식] 신청서(집행문부여, 송달증명, 확정증명) 작성
- ② (2단계) 법원에 제출 후 수령
 - * 단, 원고(채권자)가 “경기도교육감”인 경우, 집행문부여신청서에 교육감 직인 날인 필요

2단계 채무자 주소조회: 「주민등록법」 제29조

● 채무자 주소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곳과 다른 곳으로 변동되었을 경우 조회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에 “주민등록표의 교부 요청
- 구비서류: 집행권원, 강제집행 서류*, 위임장**
 - * 강제집행 서류: 재산명시신청서, 재산조회신청서 등(집행권원 “신청인”의 직인 날인 필요)
 - ** 위임장: 강제집행 및 주민등록표 교부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에게 위임한 내용 표시
- 비고: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조회하지 않도록 유의

3단계 납입 고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5조

- 시점: 채권 발생 및 징수결정 시
- 기한: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
- 방법: 등기우편(「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

[판례] 대법원 2007두20140: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판결요지)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 집행권원이 부여된 채권은 법원에 의해 채무의 사실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채권임.

- 집행권원이 부여된 채권은 납입고지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 아님.
-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은 법원에서 채권의 확정을 채무자에게도 송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

4단계 독촉: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4조

- 시점: 고지에 따른 납입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 기한: 독촉한 날부터 15일 이내
- 방법: 등기우편
- 비고: 채무자에 대하여 독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소멸시효 연장과 무관*함.
 - * 채권의 최고(催告) 효과만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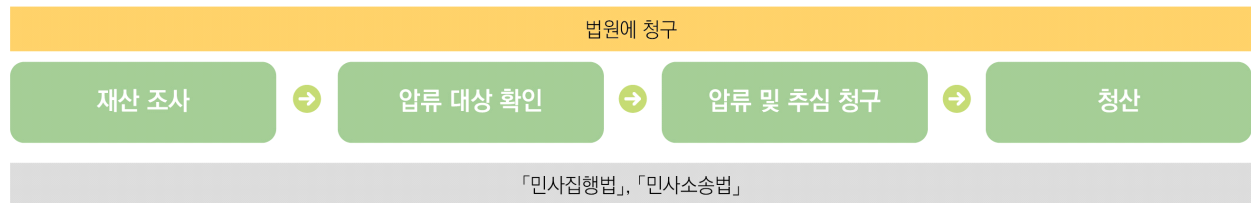
[판례] 대법원 2004두7467, 징수금부존재확인

(판결요지) (전략) ... 부당이득금의 납부독촉은 최초의 독촉에 한하여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고 ... (후략)



3 강제집행 등 청구

□ 강제집행 청구 절차 세부사항



2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

1단계 채무자 재산 내역 파악

- ① 채무자 재산을 조사하는 절차는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에 의함.
- ② 재산조사 진행을 위하여 “재산명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 * 선제적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재산명시 미이행 등 재산명시에서 재산 내역 확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만 “재산조회”의 방법으로 채무자 재산을 조사할 수 있음.
- ③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사한 후, 반드시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과를 확인하도록 할 것

● 재산명시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

- ①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
- ② 시점: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즉시 이행
- ③ 방법
 - (서류의 구비) 재산명시신청서, 집행권원, 위임장
 - (법원에 신청)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
- ④ 사후조치
 - (채무자가 재산명시 이행 시) 재산명시내역 확인[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
 - (채무자가 재산명시 미이행 시) 재산조회 절차 이행
- ⑤ 비교
 - (송달불능)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후, 3회 이상 채무자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재산조회 신청의 요건을 구성함
 - (재산명시 미이행) 법원에서는 일정한 경우 채무자를 감치처분에 처할 수 있음
이 경우, 재산조회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요건을 구성함

● 재산조회신청: 「민사집행법」 제74조

- ④ 신청 요건: 신청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산조회 신청할 것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통상, 3회 이상 송달 불능 시 해당)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명시재판에 불출석, 제출거부, 선서거부하는 경우
 -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 ④ 시점: 신청요건이 해당하게 된 때
- ④ 방법
 - (서류의 구비) 재산조회신청서, 집행권원, 위임장
 - (법원에 신청)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
- ④ 사후조치: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
 - (재산이 확인된 경우) 압류대상 특정 후, 압류 및 추심 신청
 - (무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분기별로 채무자 재산조회를 실시하며, 채권소멸시효 완성 임박 시, “채권 존재 확인의 소(訴)” 또는 “채무 이행 청구의 소(訴)” 제기

2단계 압류 및 추심

● 부동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 「민사집행법」 제78조제1항

- ④ 개시요건: 채무자의 강제경매신청
- ④ 구비서류: 강제집행신청서, 집행권원, 채무자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
 -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④ 효과: 경매절차 개시 결정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압류 시, 소멸시효 진행 중단)
- ④ 비고: 매각 후,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 회수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 「민사집행법」 제189조

- ④ 개시요건: 집행기관(집행관)에 대해 서면으로 강제집행 신청
- ④ 구비서류: 강제집행신청서, 집행권원, 유체동산의 표시*
 - * 강제집행의 목적물(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강제집행의 범위 표시
- ④ 효과: 집행관은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며, 압류 시, 채권 소멸시효 진행 중단
- ④ 비고: 현금화 절차를 거쳐, 채권 회수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23조

*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급여채권,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미함.

① 개시요건: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서면)

② 구비서류: 집행권원 등, 압류명령신청서*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 표시,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 표시 등

[참고사항] '집행권원 등' 구비서류(세부사항)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주민등록표 초본, 채권추심할 은행의 등기부등본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법인 등기부 등본, 채권추심할 은행의 등기부등본
- * 은행의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누구나 발급 가능함

③ 효과: 압류 결정* 시, 채권 소멸시효 진행 중단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 발생

④ 채권 압류 후 “추심”이 완료된 경우, 반드시 법원에 추심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도 채권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여 “압류 경합” 발생 우려

⑤ [참고] 제3채무자: 채무자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채권에서의 채무자를 의미함.

- (예시) 급여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직장이 제3채무자가 됨.
- 예금잔액의 경우, 채무자의 거래은행(금융기관)이 제3채무자가 됨.

2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

(추가 이행사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민사집행법」 제70조)

① 강제집행(재산조사-압류)과는 별도의 조치로서, “간접강제”로서의 채권 확보 수단임.

→ 채권의 실효성 있는 확보를 위하여 강제집행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

②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에 등재하는 행위

③ 청구요건

- 채권 확정 후 6개월이 도과하도록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신청방법

- (구비서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집행권원, 위임장
- 법원에 제출하여 신청이 완료됨.

[판례] 대법원 2010마77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요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둬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강제집행 불능 채권의 유지: 소멸시효 중단

- 채무자의 재산부존재, 행방불명 등으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가 사실상 불가하여 압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외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채권을 유지하는 방안

□ 청구: 「민법」 제168조 제1호

-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訴)* 제기**

* 채권존재확인소송, 채무이행청구소송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법무담당 부서(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와 협의할 것

[판례] 대법원 2015다232316, 대여금반환청구의소

(판시사항)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지급명령신청

[판례] 대법원 2011다54686,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 「민법」제170조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있었던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적극)

□ 승인: 「민법」 제168조 제3호

- 일부 변제

-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의제함
- 일부변제 일자부터 소멸시효 기산

[판례] 대법원 95다39854, 물품대금

(판결요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 각서, 확인서 징구

- 각서, 확인서, 변제확약서 등 작성일자부터 소멸시효 기산

경기도교육청 채권(미수납액) 관리 업무 편람

참고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 (실무)



1 사전 안내사항

□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이하, 민사채권)은 “법원”에 청구하여 회수합니다.

- 집행권원이 부여된 채권*의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의 확정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송부***합니다.

*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소송비용 결정, 지급명령 결정, 부당이득금 판결, 손해배상소송 판결 등)

** 결정문,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

*** 채무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더라도 이미 채권의 효력이 인정됨.

- 법원을 경유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납처분(압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민사채권에 대하여 처분으로서 압류하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함.

□ 각종 서식은 최신 서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람에서 안내하는 서식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한 예시자료입니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최신 서식을 다운받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모음]: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 민사채권 회수 시, 채권자가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로 표시되는 경우, 경기도 교육청(재무기획관)에 위임 요청이 필요합니다.

● 요청방법: 경기도교육청(재무기획관)에 공문 시행

- 경기도교육청(재무기획관)에서 신청서 및 위임장에 교육감 직인 날인 후, 등기우편으로 회신함.

● 위임요청 사무

-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의 명의로 재판*을 청구하거나 그 결과를 열람하는 경우*

* 지급명령신청, 소송의 제기,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 등

-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의 명의로 강제집행 등*을 청구하는 경우**

**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압류및추심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 구비서류(예시)

진행사항	구비 서류		비고
	개별	공통	
집행권원의 획득	지급명령신청서	위임장	
집행권원의 교부	집행문부여신청서		
재판기록의 열람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신청서		
재산 조사	재산명시신청서		
	재산조회신청서		
강제집행의 청구	강제경매신청서		
	유체동산압류신청서		
	채권압류신청서		



● [참고] 위임장

- 각종 절차 이행 시, 채권자(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등)가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으므로,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함.
 - 위임장 작성 예시는 서두에 안내함. 법원에 서류 제출 시, 위임장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 바람.
- 위임방법
 - 채권자가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인 경우, 경기도교육청(재무기획관)에 직인 날인 및 위임 요청
 - 채권자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교육장, 학교장 등),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함
[교육감 직인 날인 및 위임 요청 불요]

- (예시) 시행문

나의 안전, 우리모두의 행복을 위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수신 경기도교육감(재무기획관)
(경유)
제목 재산명시 절차 이행에 따른 직인 날인 요청

1. 관련: ○○지방법원 20○○카학○○○○

2. ○○○○ 사건과 관련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으나, 채무자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재산명시를 신청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명: ○○○○ 사건[○○지방법원 20○○카학○○○○]

나. 채권자: 경기도(교육감: ○○○)

다. 채무자: ◇◇◇

라. 채권액: 금○○○,○○○,○○○원

마. 비고: 납입고지 및 독촉(1회) 이행

붙임 1. 재산명시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끝.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형조자
시행 기획경영과-☎ () 접수 ()
우 1627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수원교육지원청 / <http://www.goesw.kr>
전화 031-250-1415 /전송 / /비공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우선입니다. _____

- (예시) 위임장

위임장

사건번호 ○○지방법원 20○○카확○○○○ 소송비용결정

원 고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495)

피 고 ○○○

경기도 ○○○ ○○○ ○○○ ○○○번길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사무를 위임합니다.

1. 수임인 (이름) [실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담당자] (생년월일 : 19○○.○○.○○.)
(주소) [사무실 주소]
2. 위임사무 : 본 사건 관련 [진행사항] 신청(서류 제출 포함) 제반 사항

2021. ○○. ○○.

위임인 원고 (이름)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 (날인 또는 서명)

(주소)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495)

(연락처) 031-249-0374

○○지방법원 귀중



0단계

채권의 발생

□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을 진행합니다.

* 집행권원의 통지(소송비용·지급명령의 확정 등), 사법상 거래관계에서의 금전상 권리 발생 등

● 학교회계에 수납하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징수결의 진행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제4장 참조

- 학교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물품의 대부
-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
- 기타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제4장(수입)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참고] “징수결정” 관련 Q&A

🔌 왜 해야 하나요?

- ▶ 규정에 정한 의무사항이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38조)
- ▶ 징수결정 및 K-에듀파인상 징수결의에 따라, 본청 총괄부서(재무기획관)에서는 분기별로 교육비특별회계 미수납 채권을 점검·관리합니다.

🔌 원 단위 이하는 어떻게 하나요?

- ▶ 절사합니다. (「지방회계법」제55조)

🔌 징수결정(징수결의)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 사례가 있나요?

- ▶ 업무담당자만 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회계부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이 관리되지 않았으며, 종국적으로 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채권이 유실된 사례 발생

🔌 징수결정(징수결의) 절차는 어떻게 문의하면 될까요?

- ▶ 기관의 세입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청(재무기획관), 교육지원청·직속기관(재무관리과, 행정과 등), 학교(교육행정실)
- ▶ 교육비특별회계 채권은 최종적으로 도금고로 수납됩니다.

1단계

채권의 고지·독촉

□ 납입 고지: 납부에 관한 사항을 채무자에게 최초로 알리는 절차

- 고지일부터 15일의 기한을 정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작성예시) 납입 고지

「청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자존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수신

(경유)

제목 소송비용액(수원지방법원 2020아:) 확정에 따른 납입 고지

1. 관련: 수원지방법원 2020아 [소송비용부담일확정]

2. 「 소」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경기도교육청에 납입 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어 [붙임]과 같이 고지하오니 **2020.11.30.(월)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방법: 계좌입금(농협 예금주:) 또는 고지서 납입

· [고지서 납입 시 안내사항]

- 농협은행 지점에서 납입할 수 있으나, 지점 외 지역농협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해당 직원이 경기도교육청고 담당자(☎031-240-6955)와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 납입금액 : 금 213,730원 (금 이십일만삼천칠백삼십원)

3.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납입고지서() 1부, 끝.

경기도교육감

(인)

첨조자 (2020. 11. 13.) 접수 ()

우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 <http://www.aoe.go.kr>

전화 031-240-0375 / 전송 031-244-9841 ☎(5,6)

직장 내 교통카드, 예비용이 부과됩니다.



● [참고] “납입고지” 관련 Q&A

🔌 **납입고지의 의무가 있나요?**

-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2절에서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 집행권원이 부여되지 않은 채권*은 고지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비로소 도달하며,
* 급여과오지급에 따른 급여환수채권 등
- ▶ 법원 판결(재판,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하므로, 납입고지 이전에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결정문, 지급명령 결정문,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 등
** 결정문(판결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 다만, 계좌번호 등 납부방법 안내가 필요하므로, 통상적으로 고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 **꼭 등기로 보내야 하나요?**

- ▶ 네, 보통우편의 발송 만으로는 도달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두20140 판결 참고)
- ▶ 또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에서 등기로 납입고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5일은 주말 및 휴일을 포함하나요?**

- ▶ 주말 및 휴일을 포함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민법」제161조에 의거하여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주소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인 경우,
 - “집행권원”과 추후 진행할 “강제집행 신청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발급해줍니다.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
- ▶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인 경우,
 - 내부 보유 자료를 활용하거나, 집행권원을 획득(지급명령신청 등)하시면 됩니다.
 - 집행권원 획득 과정에서 법원 등에서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주소보정 등을 명(命)합니다.

🔌 **주민센터에 갔는데 초본을 발급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 ▶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채권자임을 알립니다.

🔌 **주민센터에 지참하여야 하는 강제집행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채권자(경기도[대표자: 교육감 ○○○], 교육장, 교육감 등)의 위임장과 강제집행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 재산조사 절차(재산명시신청서, 재산조회신청서), 간접강제 절차(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또는 압류 및 추심 절차(강제경매신청서, 채권압류신청서, 유체동산압류신청서)에 필요한 서류의 신청서를 의미함.
- ▶ 반드시 채권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채무자 주소를 조회하면 안되나요?**

- ▶ 안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정보는 목적 내에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



경기도교육청

수신

(경유)

제 목 소송비용액(수원지방법원 20200) 확정예 田은 독촉 고지

2. 『소』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경기도교육청에 납입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붙임]과 같이 제1차 독촉 고지하오니 **2020.12.17.(목)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방법: 계좌입금(농협) 또는 고지서 납입

- 농협은행 지점에서 납입할 수 있으나, 지점 외 지역농협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해당 작물이 경거도교육금고 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 납입금액 : 금 213,730원 (금 이십일만삼천칠백삼십원)

3. 이남 시, 「인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불임 1. 남임고지서 1부

2. 독촉장 1부. 끝.

경기도교육감

22

三九

(2020. 12. 9.) 접수

()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 <http://www.goe.go.kr>

☎ 031-249-0375 / 팩스 031-244-9641 / 비공개(5.6)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우선입니다.



● [참고] “납입독촉” 관련 Q&A

🔌 [붙임]의 독촉장은 뭔가요?

- ▶ K-에듀파인에 출력할 수 있는 독촉장입니다.

세입금납입독촉장

(제 1 차) 세입금납입독촉장					
납 입 금 액	일금 213,730원 (금 이십일만삼천칠백삼십원)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과 목	장 자체수입	관 기타수입	항 기타수입	목 그외수입	납입기한 2020.12.17.(목)
적 요 : 「○○○○○○○○○의 소」에 따른 소송비용액(2020아○○○○) 납부의무자 : ○○○					

🔌 독촉은 무슨 효과가 있나요?

- ▶ 최초 독촉에 한하여 “독촉장에 의한 납입 기한”까지 채권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 독촉은 몇 번이나 보낼 수 있나요?

- ▶ 1회에 한하여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54조)

🔌 두 번 이상 보내면 안되나요?

- ▶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회째부터의 독촉은 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2004두7467 참고]

2단계

강제집행 절차 개시 전, 사전 점검 사항

□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법원의 판결문[결정문(소송비용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등), 승소 판결의 판결문 등]

● 집행권원 분실 시, 조치사항

▶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

- 제출서류: 집행문부여신청서, 위임장

▶ [참고] 집행문부여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 청 서		(*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20 . . . 가 (차)	(	단독 20 . . .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주민등록번호등 -)	집행문부여 인지액 500원 송달증명 인지액 500원 확정증명 인지액 500원	
피고(채무자)	(주민등록번호등 -)		
제3채무자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20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이 20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1항, 2항, 3항) 신청인 20 원고(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위 (송달, 확정)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법원 법원사무관(주사) (인)			



●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조치사항

* 급여환수금, 입찰보증금 등 법원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재판 또는 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미수납 채권

▶ 지급명령신청 진행

- 제출서류: 지급명령신청서, 위임장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 단, 다음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채권을 확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함.

- 채무자의 이의 신청,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발송한 지급명령 서류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 지급명령신청 시, 법정이자율은 12%임(2022.12월 기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참고] 지급명령신청서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금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1.
- 2.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 [참고] “집행문부여신청” 및 “지급명령신청” 관련 Q&A

- ▶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을 알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 [참고] ‘나의 사건 검색’ 조회 화면

나의 사건검색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

인쇄하기

나의 사건 검색하기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기본내용

청사배치

사건번호	2021	사건명	[전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경기도	피신청인	
제3채무자		청구금액	0원
재판부	보존계(민사과)	담보내용	0원
접수일	2021.	종국결과	2021. 인용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기록보존인계일	2021.		
항고인		항고일	
항고신청결과		해제내용	
보존여부	기록보존됨		
송달로,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잔액조회	
결정문송달일	2021.	확정일	2021.

- ▶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 불가능한 경우,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에 의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란 동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에 의거 채무자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칙)
- ▶ 다만, 「민사소송법」 제463조에서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도 관할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에 의거, “의무이행지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재산명시 혹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의 관할법원은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및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재산조사 절차

□ 재산명시신청

-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후, 위임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 (작성예시) 재산명시신청서

재 산 명 시 신 청

채권자 (이 름)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
 (주 소)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495)
 (송달주소) [요청기관의 주소를 기재할 것. 추후에 서류 받을 것]
 (연락처) [업무담당자 연락처]

채무자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채무자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 ○○지방법원 20○○.○.○ 결정 20○○카확○○○○
 소송비용 결정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 금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신 청 사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집행력있는 판결정본 | 1부 |
| 1.송달증명원 | 1부 |
| 1.확정증명원 | 1부 |
| 1.송달료납입서 | 1부 |

2021. ○○ . .

채권자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참고] “재산명시” 관련 Q&A

🔌 재산명시가 인용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 ▶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재산 목록을 밝히고 진술해야 합니다.
 - ▶ 명령이 있음에도 불출석하거나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최대 30일 유치하는 인신 구속

🔌 채무자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다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 ▶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가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합니다.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가 되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이 오게 됩니다.
- ▶ 대개 주민등록표(초본)를 첨부하여 채무자 주소를 최신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 주민센터에 법원의 보정명령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주민등록표(초본)을 교부합니다.

🔌 보정명령이 계속 옵니다.

- ▶ 채무자에게 계속하여 서류가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 대개 3회 이상은 오지 않습니다. 통상 3회 이상 도달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재산명시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참고]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A2200]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	부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담당사무원		
	자격		소명자료		
신청구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대상기록	사건번호	사건명			재판부
복사/출력·복제할 부분	(복사/출력 매수 매) (복제용량 메가바이트)				
복사/출력 방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출력·복제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열람·복사/출력·복제의 결과물을 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재판장 지정사항 등)					
영수일시	20 . . :		영수인		
신청수수료	☐ 500 원 ☐ 면제		(수입인지 첨부란)		
복사/출력·복제 비용	원				



□ 재산조회신청

-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함.
- (작성예시) 재산조회신청서[별지는 예시에 포함하지 않음]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 경기도 (법률상대표자: 경기도교육감) (소관: 경기도 교육지원청)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495) (송달장소: 경기도 : 시 : 교육지원청 1층 행정과)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채 무 자	이름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2021카명: 재산명시
집행권원	지방법원 2014차 입찰보증금
불이행 채권액	금 11,697,940원 및 이에 대한 2015.1.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재산명시 각하결정 정본
(인지 첨부란)	2021. . . 신청인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참고] “재산조회” 관련 Q&A

 재산조회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 ▶ 재산명시 신청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74조)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통상 3회)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명시재판에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하는 경우
 -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재산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참고]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A2200]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출력·복제할 부분	(복사/출력 매수 매) (복제용량 메가바이트)				
복사/출력 방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출력·복제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열람·복사/출력·복제의 결과물을 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재판장 지정사항 등)					
영 수 일 시	20 . . :	영 수 인			
신청 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 입 인 지 첩 부 란)		
복사/출력·복제 비용	원				



별도필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재산조사(재산명시·재산조회) 진행과 동시에, 간접강제절차로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하도록 권고합니다.
- (작성예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인지액
1,000원

채권자 (이 름)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주 소)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495)
[소관: 교육지원청, 송달받을 주소: 경기도
(연락처) 031-

]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7-)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지방법원 2018카화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1,875,320원 및 동 금원에 대한 2019.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

신청취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 결정은 2019년 7월 30일에 확정되어 집행력이 발생하였는바, 채무자는 그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신청합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1. 확정증명
1.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2021. . .

위 채권자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참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련 Q&A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 ▶ “채권 발생 후 6개월이 도과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재산조사와 아무 연관없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재산조사의 목적은 채권의 압류와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강제”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와 명예에 영향을 주는 간접강제로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재산조사와 절차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권 확보에 매우 유효한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채권 발생 후 6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 법정이자율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부여한 판결문에 기재된 바를 따릅니다.
(예시) 지급명령결정문 12%(2019.5월 이전은 15%)
- ▶ 소송비용결정문에는 이자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민법」제379조의 5%를 기재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효과적인가요?

- ▶ 현 시점에서는 매우 유효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은행연합회) 등에 채무불이행자로 통보되며, 각종 불이익 조치*가 따릅니다.
* 신용카드 정지, 신규 대출 불가, 기존 대출분에 대한 일시상환 독촉, 휴대폰 할부개통에 지장 등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 채권자가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 ▶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 해제의 의무가 없습니다.

🔌 한 번 등재하면 별도로 조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 ▶ 등재 후 10년 경과 시, 법원에서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 ▶ 그러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4단계

압류 및 추심 신청

□ 부동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

- 재산조사(재산명시, 재산조회) 결과 부동산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의 조치
- (작성예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5000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 . 부터 20 . . . 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 . . . 선고 20 가단(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송달증명서) 1통
3.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예시>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100
대 100㎡
2. 위 지상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0㎡. 끝.

2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

□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 차량운반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의 조치사항
- (작성예시)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서식 예]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강 제 집 행 신 청 서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채 권 자	성 명 주 소 대리인
채 무 자	성 명 주 소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집 행 권 원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청 구 금 액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압류물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시킬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위임장 1통 20○○. ○. ○. 채 권 자 ○○○ (인) 대 리 인 (인) 채권자주민등록번호: ○○○○○○-○○○○○○○○	
※특약사항 1.본인이 수령할 예납금잔액을 본인의 비용부담하에 개설은행: ○○은행 ○○지점 오른쪽에 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예 금 주: ○○○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채권자 ○○○ (인) 2.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확인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건 강제집행 위임을 취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없음. 채권자 ○○○ (인)	



[별지]



청구채권액 내역

원 금	금 15,000,000원	
이 자	금 667,808원	(금 15,000,000원 × 0.25 × 65/365) : 원미만 버림 2001. 3. 28.부터 2001. 5. 31.까지 65일간 이자
합 계	금 15,667,808원	

끝.

2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

제출 할 곳	압류물건 소재지 법원소속 집행관사무소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 련 법 규	민사집행법 제189조
불복절차 및 기 간	·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의이의 소, 집행에 대한 이의		
비 용	· 인지액 : 5,000원 · 집행관 수수료, 감정료, 여비, 송달료, 통신료 등 예산 필요 · 법원경매정보(http://www.courtauction.go.kr/) 동산 경매비용 참조		
기 타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참조		



□ 채권 강제집행 신청서

-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조치로서, “추심” 또는 “전부(轉付)”의 방법으로 회수함.

* 제3채무자를 의미함. 채권자(경기도 등)의 직접적인 채무 상대방은 아니나, 채무자의 채무자로서 채무 이행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조치임.

(예시) 채무자의 급여채권의 경우 “직장”이 제3채무자가 됨.

채무자의 예금잔액의 경우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가 됨.

- (참고) “추심”과 “전부”의 비교

[공통점]

- ▶ “추심”과 “전부” 모두 “채권 압류”를 전제로 함.
- ▶ 이 때의 “채권 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서, 법원에 신청하고 결정으로서 이루어짐.
- ▶ “채권 압류” 이후,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함.

[차이점]

- ▶ 추심명령
 - 추심명령 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채무자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음.
- ▶ 전부명령
 - 전부명령 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보유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킴

[실무 적용]

- ▶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충분한 경우
 -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 ▶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사유

- “전부명령”시,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이전받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함.
- 전액 회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추심할 수 없음.



- (작성예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신청서의 별지 서식은 포함하지 않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수입인지
4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 및 그 금액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20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작성예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별지 서식은 포함하지 않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수입인지
4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 및 그 금액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송달증명서 1통

20

채권자 (인)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참고] “압류 및 추심” 관련 Q&A

🔌 압류에 제한은 없나요?

▶ 일정 부분 제한이 있습니다.

– 압류 금지 재산: 「민사집행법」제246조에 해당하는 재산

-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 병사의 급료
-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
-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 압류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 (채권 보전 조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민법」제168조)
- ▶ (채권 회수 조치) 압류는 선순위 채권이 있다 하여도 상호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습니다.

🔌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 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이전까지 정기적으로 재산조사(재산조회) 절차를 이행하여,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채권 소멸시효가 임박할 경우, “채권 존재 확인의 소” 또는 “채무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 소멸시효를 10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압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채권의 보전”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압류는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의 전제조건입니다.
- ▶ 또한, 채무자의 추가적인 재산을 확인하기 전까지 재산조사 등 절차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채권 관리의 중간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추심신고서

-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완료한 경우, 반드시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 미제출 시, 채권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음.
- (작성예시) 추심신고서

채 권 추 심 신 고

사 건 2019타채OO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김 O O
채 무 자 박 O O
제3 채무자 주식회사 OO은행

추심신고 할 금액
금 2,208,247원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위와 같이 추심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19. 1. .

위 채권자 김 O O (인)

OO지방법원 기타집행계 귀중



● [참고] “추심 신고” 관련 Q&A

🔌 추심 신고는 언제 하나요?

- ▶ 민사채권의 제3채무자(은행 등) 압류가 있고, 그에 따른 추심이 완료된 경우에 법원에 신고합니다.

🔌 추심 신고는 왜 하나요?

- ▶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에 귀속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 ▶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 또한 채무자의 채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적법하게 추심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다른 채권자의 권리 행사”는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의미할 것입니다.
- ▶ 이 경우,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전액을 추심하였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심신고서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하나요?

- ▶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2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



경기도교육청
채권 관리 업무 편람

3

처분에 의한 채권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 | 개요

□ 정의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法)집행·공권력의 행사에 따라 성립하는 채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대가*, 금전 납부를 명하는 불이익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이라는 의미에서 “지방세외수입”이라고 부르기도 함.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료”, “대부료” 및 그에 따른 “연체료”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변상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과태료” 등
- 개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통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조세외의 금전수입”이라는 의미로 “세외수입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함.

□ 특징

- (자력집행 가능) 행정청과 사인(私人)의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에 따른 처분으로서, 강제력을 동반한 자력집행 가능
 - 민사소송 제기를 통한 채권의 회수는 허용되지 아니함

[판례] 대법원 2013다207941, 건물명도

(판결요지)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의 근거) 금전 납부를 명(命)하는 적법한 처분*이 집행의 근거가 됨.
 - * 과태료 부과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변상금 부과 처분 등
- (개별법에 따른 회수절차) 개별법에 처분의 근거와 회수절차*를 정하고 있음.
 - * 통상적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정함.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금전 납부를 명(命)하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의견조회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예시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

-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처분: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 국가공무원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금전·재산의 취득·제공 및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이하, 취득·제공 등)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함.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처분: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 지방공무원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금전·재산의 취득·제공 및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이하, 취득·제공 등)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함.

- 변상금 부과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무단점유(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없이 사용·수익·점유)를 한 자에 대한 처분으로, 처분에 따른 금액 징수

- 과태료 부과 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행정질서벌로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 [참고]“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의 의미: 법제처 해석례 13-0515(2013.11.29.)

● 후반부 “예에 따른다”의 의미: 법제처 해석례 10-0446(2011.1.13.) 참조

- 준용형식 중의 하나로, 준용*되는 규정이 많거나 일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문의 규정을 특정한 경우에 사용함.

* 준용: 통상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표현은 「지방세기본법」등 관계법령상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일련의 절차와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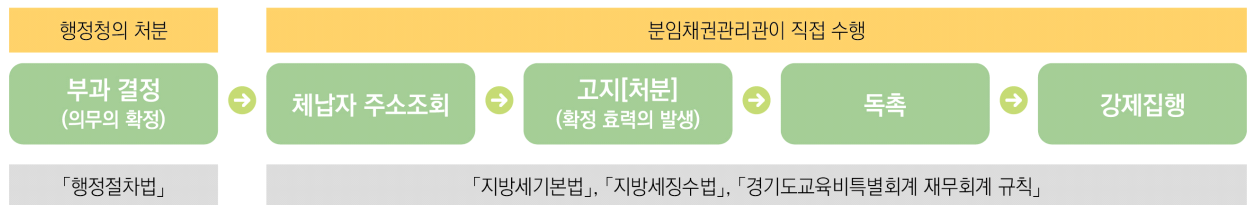
● 전반부 “지방세 체납처분”의 의미: 지방세 관련 법령 및 국세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참고

- (원칙)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지방세징수법」 등)을 따름.
- (추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153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07조)



2 회수 절차

□ 회수 절차: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



1단계 처분의 실시

- 개별법 및 「행정절차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금전의 납부를 명(命)하는 처분을 확정하는 절차임.
- 후속 조치로서의 납입 고지, 독촉, 체납처분 절차는 “처분”의 적법성을 전제하므로, 반드시 개별법령과 「행정절차법」 등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처분하도록 유의할 것.

* 사전통지, 의견조화, 행정심판의 고지(「행정심판법」제58조) 등

- (예시) 금전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인사위원회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부가금 납부 의무 발생 -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 질서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납부 의무 발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청의 변상금 부과 처분	▶ 토지 등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납부 의무 발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행정청의 보조금 환수 처분	▶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보조금 환급(납부) 의무 발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33조의3

2단계 주소조회: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1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등)에 처분대상자 주소조회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요청

- ①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징수절차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1호의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
- ② 처분의 내용, 사유 등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요청

- 단, 체납 업무 절차 추진과 관련하여 처분대상자 주소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 생략 가능

3단계 고지

- 의의
 -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 금전의 납부를 안내하는 절차*
 - * 처분 사실의 고지와 납부의 고지는 별개의 사무이나, 실무적으로 이를 통합하여 처리하기도 함.
처분 사실을 처분 상대방에게 최초로 고지하는 경우, 개별법령과 「행정절차법」 등에 정하는 절차 준수 의무

[재결례]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30(2012.4.23.)

(재결요지) 행정청이 침해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판례] 대법원 83누6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 고지는 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으며, 고지에 따른 납부기간이 도과한 이후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함.(「지방세기본법」제40조)
- 방법: 「지방세기본법」,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 시점: 처분·결정의 확정 시
 - 기한: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름
 - * 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령을 의미함. 고지와 독촉의 기한은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
 - 방법: 등기우편



- 특이사항: 공시송달(「지방세기본법」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

- 우편 등에 의한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하다는 사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지는 않음(대법원 2015두43599)
-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관보, 공보, 일간신문 中 1가지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고
- 효과
 -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4단계 독촉

- 의의
 - 독촉은 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으며, 고지에 따른 납부기간이 도과한 이후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함.(「지방세기본법」제40조)
- 고지: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름
 - * 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령을 의미함. 고지와 독촉의 기한은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
- 효과:
 - “최초 1회”의 독촉 고지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 단, 그 이후의 추가적인 최고(催告)의 효과만 있음.

[판례] 수원지법 2015구합65019, 조세채권존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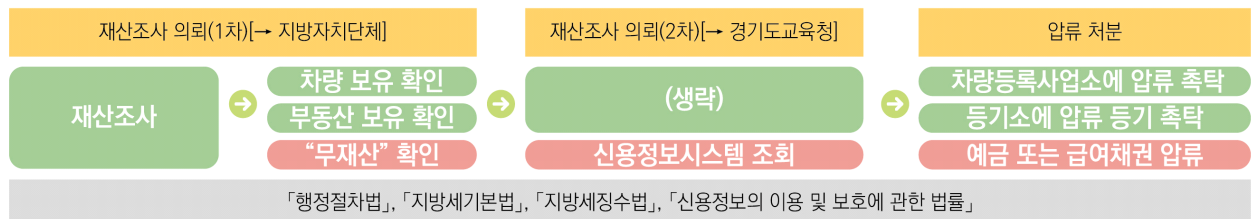
(판결이유) (전략) ... 과세관청이 체납세액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조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납부고지와 독촉이 각각 1회에 한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이상, ... (후략)

5단계 강제집행

- (재산조사) 유형자산(토지, 차량운반구), 현금성자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체납처분) 압류 → 매각 → 청산
 - 직접 압류,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통한 압류 등

3 강제집행 절차

□ 절차



□ 1단계 재산조사

● (지방자치단체에 의뢰) 부동산, 차량운반구 재산 정보 확인

- 요청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도청·시청([행정구]구청 포함)
 - 토지 정보: 「지방세기본법」제86조제1항제4호 (← 재산 관리 부서)
 - 차량운반구 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4조(←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8조(← 건설·건축 관련 부서)
- 비고: 세정과 등 지방세 관련 부서는 정보 요청대상이 아니므로, 요청 시 유의할 것

● (직접 조사) 수색권 및 질문·검사권에 따른 체납자 직장정보 등 확인

-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질문·조사권: 「지방세징수법」제36조
- 직장정보: 체납자가 직장에서 수령하는 봉급(급여) 확인 [→ 급여채권]
- 자체 보유 정보* 활용
 -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정보 등을 의미함.
 - (예금채권) 기관에서 보유 중인 체납자의 계좌 정보[→ 거래 금융기관(은행) 확인]

● (본청 총괄부서에 요청) 신용정보조회 요청

- 요청대상
 - 고액·미수납 세외수입채권(체납액 1,000만원 이상)
 - 그 밖에 채권 담당 기관(부서)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채권(사전협의 후 진행)
- 요청요건
 -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를 “재산없음”으로 회신한 경우
 - 채권관리기관(부서)에서 체납자의 직장 또는 예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요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없음”으로 회신한 공문을 붙여, 경기도교육청(재무기획관)에 공문 시행
- 확인 가능 정보
 -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 금융기관 대출·연체 정보, 신용카드 발급내역 등



● 조회 요청(예시)

토지	-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등 재산 관리 부서”에 조회 요청 「지방세기본법」제86조제1항제4호
차량운반구(건설기계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건설과에 조회 요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8조
금융자산	- 은행 등에 조회 요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 2단계 압류 대상의 확인

- 재산의 종류에 따라 압류 처분 절차가 상이(相異)하므로, 종류별로 구분할 것

부동산 자산	토지, 건물 등
차량운반구	자동차, 건설기계 등
채권	금융채권, 급여채권 등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 내역 등

□ 3단계 압류 처분

- 압류 처분은 체납자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행하도록 유의할 것

[재결례] 국장, 심사기타99-0171(2000.1.7.)

(재결요지) 압류요건인 독촉장 발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한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한 처분임.

3 처분에 의한 채권

● 촉탁에 의한 압류: 「지방세징수법」제55조 및 제56조

- 체납자 재산에 대해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부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를 실행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을 의미함.
- 촉탁에 의한 압류(예시)

재산구분	관리기관(부서)	관련 서식
토지 등 부동산	법원 등기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40호 서식
차량운반구(자동차)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46호 서식
차량운반구(건설기계)	지방자치단체 건설과(부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46호 서식

●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통지: 「지방세징수법」제52조

- 채납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납자 채권에 대한 압류를 통지하는 방식을 의미함.

* 채납자의 채무자는 채권자(경기도 등)와 거래관계가 없으나, 채납자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채권자(경기도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를 의미함.

-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통지” 방식으로 압류할 경우,
제3채무자에게 채권 압류의 통지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함.
-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통지(예시)

“급여채권” 압류 시	▶ 제3채무자: 채납자의 직장 ▶ 처분방식: 채납자의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채권 압류 통지
“금융채권” 압류 시	▶ 제3채무자: 채납자의 거래은행 ▶ 처분방식: 채납자의 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채권 압류 통지

● 비고: 압류 처분 시, 채납자(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 압류 촉탁,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와 별도로 채납자(처분의 상대방)에게도 별도로 압류사실을 알려야 함.

- 참고 서식

채권에 대한 압류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 서식] 채권 압류 통지서 - 급여, 예금 등 채납자가 보유 중인 채권 압류
재산에 대한 압류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재산 압류 통지서 - 부동산, 차량 등 채납자가 보유 중인 재산 압류

□ 4단계 공매 및 청산

● 공매 대행 의뢰

- 부동산, 유체동산 등 처분하여야 하는 재산 압류 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하는 절차
- 처리방식

● 본청 총괄부서(재무기획관)와 사전 협의 진행 - (압류처분의 적법성 검토) 채납절차로서의 압류처분이 법령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 - (압류처분의 적정성 검토) 공매 처분으로서 채납액 회수 가능성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 의뢰 - (사전협의) 공매 대행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 진행 - (공매 대행 의뢰) 일정한 서식*에 작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문 시행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0호 서식] 공매 대행 의뢰서

- 비고: 일정한 경우*, 세외수입의 채권 회수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공매 대행 유예 가능

* 압류 재산의 공매로서 채납액을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압류 이후 채납자가 채납액 납부를 문서로서 약속(확약)한 경우 등



● 직접 추심

- 유가증권 등 금융재산, 급여채권 등을 압류하고 행정청이 직접 추심하는 절차
- 처리방식

금융재산의 직접 추심	▶ 금융기관에 체납자 금융재산에 대한 체납액 추심 요구 ▶ 추심 완료 시, 압류 해제
급여채권의 직접 추심	▶ 체납자 직장에 체납자 급여채권에 체납액에 대한 추심 요구 - 급여 공제 등의 방식으로 수납 ▶ 추심 완료 시, 압류 해제

4 강제집행 불능 채권의 유지: 소멸시효 중단

- 채무자의 재산부존재, 행방불명 등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채권을 유지하는 방안

- 세외수입채권의 경우 개별법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기에 반드시 채권의 종류(징계부가금, 변상금, 과태료 등)에 따라 관계 법령 확인 필요
-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68조 제1호(청구) 및 제3호(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한 경우도 있으니 업무 추진 시 참고할 것

- 청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訴) 제기: 공법상 당사자소송

[판례] 대법원 2017두41771

(판시요지) 다만 납세의무자가 무지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한 사유들에 의해서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고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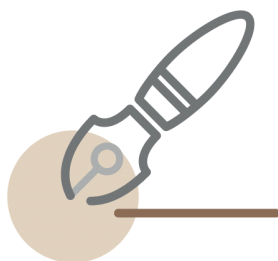
- 승인: 일부 변제 및 각서, 확인서 청구 등

[심판결정례] 조심2020지0062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압류해제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쟁점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은** 쟁점체납세금의 존재 및 액수 등을 인식한 것으로 「민법」 제16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인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압류해제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쟁점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날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체납세금에 대한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이 건 처분을 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경기도교육청

채권 관리 업무 편람



경기도교육청 채권(미수납액) 관리 업무 편람

참고

처분에 의한 채권 (실무)



1 | 사전 안내사항

□ 처분에 의한 채권(이하, 세외수입채권 또는 체납액)은 행정청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회수합니다.

- 민사법원에 청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 재무기획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입니다. 따라서, 체납절차 이전의 처분은 주관부서에 문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채권의 부과 징수 근거는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마련되어 있으니, 부과 징수와 후속 조치로서의 체납처분 시, 반드시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교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등

□ 각종 서식은 최신 서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람에서 안내하는 서식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한 예시자료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별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경기도교육청은 과세자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으므로, 체납처분 시, 일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각종 법령에 과세 자료 공유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편람에도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이익(개인정보보호)을 우선한 판례도 존재하는 바,
- 유관기관에 자료 요청 시, 유선 등으로 사전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단계

행정처분: 금전의 부과·징수 처분

- 행정청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무 미이행자 등에 대하여 금전의 부과·징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 개별법령에서는 금전의 부과·징수처분의 근거와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등에서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개별법령에 정하므로, 징수 절차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고지의 방법, 납입고지·독촉고지 기한 등에서 차이 발생
 - 이때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이라는 의미로 “세외수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 체납처분 절차는 금전의 부과·징수 처분이 사전에 적절하게 고지된 이후의 후속절차 (재산조사, 압류 처분 등)를 의미합니다.
 - 금전의 부과·징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처분 시 「행정절차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조회”, “행정심판의 청구” 등의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 * 징계부가금, 과태료, 변상금 등의 부과처분
 - “부과 통지” 및 “납입 고지”, “독촉” 이후에도 체납하는 경우, 재산조사, 압류처분 등 체납 처분 절차를 이행합니다.

- 실무적으로 “처분의 고지”와 “납입의 고지”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처분의 요건을 갖추어 고지하여야 합니다.
 - 처분 시 고려할 사항
 - 도달주의: 처분대상자에 대해 처분이 도달(고지)할 경우,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 법령준수: 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령과 「행정절차법」에 정한 절차 준수 의무
 - [참고] 종전 납부고지와 금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이 변경된 새로운 납입 고지는 종전 고지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함.
 - [대법원 95누12293 참고]

참고사항1

침익적 행정처분 사전절차

□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서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 기재해야 할 사항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제22조

- ▶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 ▶ 청문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공청회:
 -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사항

- ▶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절차법」 제23조
- ▶ 불복에 관한 사항 고지: 「행정절차법」 제26조

● [참고] “행정처분” 관련 Q&A

⏻ 행정처분에 대하여 안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아닐 경우, 하자가 승계되어 추후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단계

세외수입의 고지 · 독촉

□ 처분에 의하여 처분상대방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을 진행합니다.

*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기획재정부예규 제565호) “비교환수의 분류” 참고

●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징수결의 진행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제4장 참조

- ▶ 학교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물품의 대부
- ▶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
- ▶ 기타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제4장(수입)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납입 고지: 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의 부과·징수 사실을 처분상대방에게 고지하는 절차

- 납입 고지의 기한은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작성예시) 세외수입[변상금]의 납입 고지

행정문 교목의 기본거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수신 김○○ (○○○○○) ○○도 ○○시 ○○구 ○○○로 ○. (○○로)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통지

1. 관련: 경기도교육청 ○○○○○과-○○○○○(202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제97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6조

2. 귀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토지)을 대부받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가. 무단점유 공유재산: 토지 ○○○㎡ (○○시 ○○○번길 ○○)
나. 무단점유 기간: 201○.○.○. ~ 201○.○.○.

3. 이에, 다음과 같이 변상금 부과를 통지하오니,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상금: 금○○,○○○,○○○원([붙임 2] 산출내역 참고)
나. 납부기한: 2021.○.○.
다. 납부방법: [붙임 1] 참고 [납부 장소를 포함하여 알람]
라. 처분의 원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간단하게 기재)

4. 또한,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납부고지서 1부
2.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경기도교육감

청조자
시행 재무기획관-원 () 김수 ()
우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 http://www.goe.go.kr
전화 031-249-0374 /전송 031-244-9841 /비공개
작성 내 교목함, 예방에 우선합니다.

□ 독촉 고지: 납입 고지 기한이 도과하도록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재차 고지하는 절차

- 독촉의 기한은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연장은 “최초 독촉”에 한정되므로, 재차 발송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 (작성예시) 세외수입[변상금] 독촉 고지

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수신 김○○ (○○○○○) ○○도 ○○시 ○○구 ○○○로 ○, (○○로)
(경유)

제목 변상금 독촉 고지

1. 관련: 경기도교육청 ○○○○○과-○○○○(202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제97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6조
2. 귀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토지)을 대부받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납입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3. 납기일이 도과하도록 변상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독촉 고지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상금: 금○○◇,○○○원([붙임 3] 산출내역 참고)
나. 납부기한: 2021.○.○.
다. 납부방법: [붙임 2] 참고 [납부 장소를 포함하여 알람]
라. 처분의 원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간단하게 기재)
4. 또한,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1. 독촉장 1부
2. 변상금 납부고지서 1부
3.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경기도교육감

협조자

시행 재무기획관-☎ () 접수 ()

우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 <http://www.goe.go.kr>

전화 031-249-0374 / 전송 031-244-9841 / 비공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우선입니다.



참고사항2

처분대상자에 대한 고지·독촉 절차 보완 방법

□ 처분대상자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 주민센터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요청(「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1호의 “공무상 목적”)

- (작성예시) 체납처분 절차 이행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요청



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수신 본오1동장
(경유)

제목 징계부가금 체납처분 절차 이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요청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관련: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202○.○.○.)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
- 징계부가금 체납처분 절차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체납처분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체납처분대상자 주소])
나. 처분내용: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처분
다. 요청사유: 폐문부재에 따른 처분 고지서 반송(3회)

붙임 (참고) [처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1부. 끝.

경기도교육감

★주무관 세입담당사무관 재무기획관

협조자

시행 재무기획관-EN () 접수 ()

우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 / http://www.goe.go.kr

청)

전화 031-249-0374 /전송 031-244-9841 / /비공개(5,6)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우선입니다.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시”로 공고

- *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님. 실무상 사용하는 개념임.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지서
공시 송달 공고**

2019년 1월 1일

- | 대상자 | 주소 | 등록번호 | 부과금액 | 부과일자 | 납기일자 |
|-----|----|------|------|------|------|
| | | | | | |
| | | | | | |

- 68 —————



□ [참고] “납입고지 및 독촉” 관련 Q&A

💡 민사채권과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 ▶ (발생 원인의 차이) 통상 민사 채권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전외부 부과 처분과는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 ▶ “처분에 의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실현하는데, 채권 회수를 위한 각각의 조치가 일종의 처분에 해당되며, 지방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 처분 사실과 납부 고지를 같이 해도 되나요?

- ▶ 실무상 동시에 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84누111]
- ▶ 다만, 납입고지에 의하여 세외수입 부과 결정 고지를 할 경우, 납입고지의 하자가 부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납입고지와 독촉의 기한을 왜 세부적으로 안내하지 않나요?

- ▶ 기본적으로 세외수입은 개별법령에 처분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해당 법령마다 납입고지와 독촉의 기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개별법령에 정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촉을 1회만 하도록 안내하는 이유가 있나요?

- ▶ 독촉은 1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 ▶ 최초 독촉에 한하여 “독촉 기한”까지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며, 독촉 기한이 도과한 후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 납입고지와 독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세외수입채권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 고지와 독촉의 하자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후행 처분인 체납처분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절차의 하자에 따라 후행 행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처분대상자의 주소를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행정처분 및 그에 따른 부과·징수의 고지는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처분의 내용, 사유 등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요청 [참고사항 2]

💡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이 처분대상자에게 계속하여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2]

2단계

채납자 재산조사

□ (의뢰) 채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소유 현황 조사

- 경기도교육청은 도민에 대한 과세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시청 등)에 의뢰해야 함.
- (작성예시) 채납자 차량소유현황 조회 의뢰

- ▶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에 대한 조회를 의뢰할 경우
- 관련근거: 「건설기계관리법」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참고서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 서식



평등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변상금 채납자 자동차 소유현황 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2020.0.0.) [처분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제4호
3. 변상금 채납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채납자 ○○○에 대한 자동차 소유 현황을 조회 요청하오니,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
나. 자료이용 목적: 변상금 채납처분 [차량운반구(자동차) 압류 처분 등]
다. 자료의 범위: 채납자 ○○○의 차량소유 여부 및 차량번호(소유 시)
라. 자료 제공방식: 전자문서

- 붙임 1. 변상금 채납처분 내역 1부
2. 전산자료 제공신청서 1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 서식 참고] . 끝.

경기도교육감

수신자 ○○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주무관

세입담당사무관

재무기획관

협조자

시행 재무기획관-000 () 접수 ()

우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 http://www.goe.go.kr

전화 031-249-0374 / 전송 031-244-9841 / 비공개(5,6)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우선입니다.



- (작성예시) 체납자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의뢰

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수신 ○○시장(재산관리과장)[체납자 주소조회 결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경유)

제목 변상금 체납자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202○.○.○.) [처분에 관한 사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제4호
3. 변상금 체납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체납자 ○○○에 대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회 요청하오니,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
나. 자료이용 목적: 변상금 체납처분 [부동산 재산 압류 처분]
다. 자료의 범위: 체납자 ○○○의 부동산(토지, 건물 등) 소유 여부
라. 자료 제공방식: 전자문서

붙임 (참고) 변상금 체납처분 내역 1부. 끝.

경기도교육감

★주무관

세임담당사무관

재무기획관

협조자

시행 재무기획관-0000 () 접수 ()

우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 <http://www.goe.go.kr>

전화 031-249-0374

/전송 031-244-9841

/비공개(5,6)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우선입니다.

□ (직접) 「지방세징수법」제36조에 따른 질문·조사

- 채납자의 직장 정보, 계좌정보 등 기본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채권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절차를 의미함.
- (작성예시) 채납자의 직장에 대한 질문·조사 절차[→ 급여 정보 확인]

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수신 [채납처분대상자 직장]

(경유)

제목 변상금 채납절차에 따른 채납처분대상자 급여채권 관련 자료제출 요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202○.○.○.) [처분에 관한 사항]
「지방세징수법」 제36조
3. 변상금 채납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귀 기관의 소속직원 ○○○에 대한 급여채권 관련 자료를 요구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
나. 채납액 현황
1) 금액: 금○○,○○○,○○○원
2) 종류: 변상금
3) 비고: 납부고지(1회) 및 독촉(○회)에도 지속적으로 채납 중
다. 요구자료
1) 급여명세서[기간: 202○.○.○ ~ 현재]
2) 급여수령 계좌 관련: 금융기관, 계좌번호
3) 기타: 채납자 ○○○의 급여채권 기타 압류 내역

붙임 (참고) 변상금 채납처분 내역 1부. 끝.

경기도교육감

★주무관

세입담당사무관

재무기획관

첨조자

시행 재무기획관-인 () 접수 ()

우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 http://www.goe.go.kr

전화 031-249-0374 /전송 031-244-9841 /비공개(5.6)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우선입니다.



- (작성예시) 체납자의 거래금융기관(은행)에 대한 질문·조사 절차[→ 계좌 정보 확인]

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수신 [체납처분대상자 거래 금융기관]

(경유)

제목 변상금 체납절차에 따른 체납처분대상자 예금채권 관련 자료제출 요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202○.○.○.) [처분에 관한 사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호
「지방세징수법」 제36조
3. 경기도교육청은 ○○○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납입 고지 및 독촉에도 체납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 이에, 귀 기관과 거래 중인 ○○○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
나. 체납액 현황
1) 금액: 금○○,○○○,○○○원
2) 종류: 변상금
3) 비고: 납부고지(1회) 및 독촉(○회)에도 지속적으로 체납 중
다. 요구자료
1) 거래 사실 여부
2) 거래 계좌 잔액(총액)
3) 기타: 체납자 ○○○의 예금 압류 내역

붙임 (참고) 변상금 체납처분 내역 1부. 끝.

경기도교육감

주무관

세입담당사무관

재무기획관

발조자

니행 재무기획관-EN () 접수 ()

구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 http://www.goe.go.kr

전화 031-249-0374 / 전송 031-244-9841 / 비공개(5,6)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우선입니다.

□ (요청) 본청 출괄부서(재무기획관)에 신용정보조회 요청

-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채납자의 재산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각종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로서, 본청 출괄부서(재무기획관)에 요청하여 수행

- ▶ (대상) 고액·미수납 세외수입채권(채납액 1,000만원 이상)
그 밖에 채권 담당 기관(부서)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채권(사전협의 후 진행)
- ▶ (요건)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재산조사 의뢰, 직접 조사에도 불구하고 채납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방법)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에 신용정보조회 요청 후, 보고서 열람 안내(공문 회신)에 따른 방문 열람

- (작성예시) 채납처분대상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요청

청원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수신 경기도교육감(재무기획관)
(경유)
제목 변상금 채납절차 추진에 따른 채납자 신용정보조회 요청

1. 관련: 경기도○○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202○.○.○.)[처분에 관한 사항]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20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3조
「지방채징수법」 제36조

2. 변상금 채납자에 대하여 채납절차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재산조사 추진 사항 및 회신결과 기재>

3. 재산조사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확인되어(또는 유관기관에서 정보제공거부로 회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조회를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나. 채납액 현황
1) 금액: 금○○.○○○.○○○원
2) 종류: 변상금
3) 비교: 납고지(1회) 및 독촉(○회)에도 지속적으로 채납 중
다. 요청사항
1) 채납자 거래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2) 기타: 채납자 채권 내역 등 재산 보유 내역

붙임 1-1. 부동산 소유 현황 조사내역 1부
1-2. 자동차 소유 현황 조사내역 1부
2. 금융채권(예금채권) 관련 정보 조사내역 1부. 끝.

경기도교육감

★주무관 세입담당사무관 재무기획관

함조자

시행 재무기획관-내 () 접수 ()

우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 http://www.goe.go.kr

전화 031-249-0374 /전송 031-244-9841 /비공개(5,6)

직장 내 교통카드, 예방에 우선합니다.



● [참고] “재산조사” 관련 Q&A

🔌 부동산, 차량, 예금계좌 아무 것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안내한 바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에 신용정보조회를 요청하며, 그 경우에도 재산이 발견되지 아닐 경우, 재산조사를 분기별로 반복합니다.

🔌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자료 제공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 ▶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 가급적, 자료를 요청하기 이전, 유관기관과 협의 실시(유선 등)를 권고합니다.
- ▶ 다만,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확인하여, 본청 총괄부서(재무기획관)와 협의를 실시합니다.

🔌 체납자 재산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처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 압류는 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는 효과가 있으며, 매각-청산의 선제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기관에서 보유 중인 체납자 정보를 이용해도 무관한가요?

- ▶ 주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의 부과 처분 등은 “공법상 관계”에 해당하므로, “공법상의 주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때, “공법상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상 제19조를 따릅니다.
 - 부과 처분 등의 업무 과정 중, 주민등록지 주소를 습득한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공법상의 주소”는 “주소의 이종등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그밖의 정보에 관한 사항: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참고
 - 관련 법령은 과세처분시 일정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기관 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

🔌 체납자 직장은 체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 ▶ 체납자의 직장은 「지방세징수법」 제36조제5호에서 정한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 법 제36조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은 자료제출 요구의 대상입니다.

🔌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무상 목적으로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지방세징수법」상 질문·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요건을 구성합니다.

3단계

채납자 재산 종류에 따른 압류 방법의 구분

□ 채납자 재산조사 절차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채납자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재산: 토지, 건물 등
- 유체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등
- 채권: 급여채권, 예금채권 등

□ 채납자 재산을 분류하는 이유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채납처분 절차(압류 방법)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 채납자 재산 분류에 따른 압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재산	▶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압류 등기” 촉탁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압류” 표시
차량운반구(자동차)	▶ 채납자 주소 소재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 요청 -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표시
차량운반구(건설기계)	▶ 채납자 주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건설과 등에 “압류” 요청 -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압류” 표시
급여 채권	▶ 채납자의 직장(급여지급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제3채무자 압류” 통지 -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환
예금 채권	▶ 채납자 거래 금융기관(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제3채무자 압류” 통지

□ [참고] “채납자 재산 분류” 관련 Q&A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 절차는 무엇인가요?

-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나, 채납자의 채무자로서 채납 이행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조치임.
 - 채납자의 급여 채권을 압류한 경우, 급여지급기관인 “직장”이 제3채무자가 됨.
 - 채납자의 예금 계좌를 압류한 경우,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가 됨.



4단계

압류 처분의 실시

- 압류 처분 시,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것과 별개로, 처분의 상대방에게도 반드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예시) 압류 통지서

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수신 **채납자(압류 대상자)**[주소: ○○시 ○○구 ○○○로 ○○-○]
(경유)

제목 **변상금 채납처분에 따른 부동산 재산압류 통지**

1. 관련: **[변상금 부과처분 시행문]**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시행문]
[관련 법령]

2. 귀하께서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토지)을 무단점유·사용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귀하에게 변상금 처분 및 통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후,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납입 고지 및 독촉을 실시하였으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귀하의 재산(토지)을 다음과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채납액 현황
<대상자 및 변상금/연체료가 포함된 채납액 내역>

나. 압류 내역: [붙임 1] 압류통지서 참고

4. 아울러, 변상금 채납처분(압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 행정심판 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 행정소송 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붙임 1. 압류통지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제45조 서식] 참고]** 1부
2.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내역 1부. 끝.

경기도교육감

★주무관 세입담당사무관 재무기획관

함조자

시행 재무기획관-원 () 접수 ()

우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 <http://www.goe.go.kr>

전화 031-249-0374 /전송 031-244-9841 /비공개(5,6)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우선입니다.

□ 부동산 재산에 대한 압류

- 처분 방법: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압류 등기” 촉탁 및 “채납자”에게 통지*
* 채납자에 대한 통지는 위의 “압류 통지서” 참고
- (작성예시) 부동산 재산 압류 등기 촉탁

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수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발송**
(경유)

제목 **세외수입(변상금) 채납자 부동산 압류 등기 촉탁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외수입(변상금) 채납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지방행정재정·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등기를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압류 대상 부동산

<압류 대상 부동산의 표시: 채납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수량 및 품질·소재지 등, 압류와 관련된 채납액의 내용(채납액 종류, 처분연도, 납부기한 등)>

- 붙임 1. 압류촉탁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참고] 1부
2. 압류조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고] 1부, 끝.

경기도교육감

★주무관 세입담당사무관 재무기획관

협조자

시행 재무기획관-원 () 접수 ()

우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 <http://www.goe.go.kr>

전화 031-249-0374 /전송 031-244-9841 /비공개(5.6)

직장 내 교통행, 예방이 우선입니다.



□ 차량운반구 재산에 대한 압류

- 처분 방법: 체납자 주소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 촉탁 및 체납자에게 통지*
* 체납자에 대한 통지는 위의 “압류 통지서” 참고
- (작성예시) 차량운반구 압류 촉탁

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수신 **체납자 소재지 차량등록사업소**
(경유)

제목 **세외수입(변상금) 체납자 차량 압류 등기 촉탁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외수입(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다음 차량에 대하여 압류 등기를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압류 대상 재산
<압류 대상 **차량**의 표시: 체납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수량 및 품질·소재지 등,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체납액 종류, 처분연도, 납부기한 등)>

- 붙임 1. 압류촉탁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참고] 1부
2. 압류조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고] 1부. 끝.

경기도교육감

★주무관

제임담당사무관

재무기획관

원조자

시행 재무기획관-@N () 접수 ()

우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 http://www.goe.go.kr

전화 031-249-0374 /전송 031-244-9841 /비공개(5,6)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우선입니다.

□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 처분 방법: 채납자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통지 및 채납자에 대해 압류 통지
* 채납자에 대한 통지는 위의“압류 통지서” 참고
- (작성예시) 급여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 압류 통지

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수신 **채납자 직장 등 급여 지급 기관**

(경유)

제목 **세외수입(변상금) 채납자 급여 채권 압류 통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외수입(변상금) 채납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채납자 급여 채권 압류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추심 및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압류 내역: [붙임] 압류통지서 참고
 - 나. 압류 일자: (문서 발송 일자)
 - 다. 입금 계좌: (추심금을 지급받을 계좌)
 - 라. 비고: 이 통지를 받은 후, 채납자에게 채무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 붙임 1. 압류조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고] 1부
2. 압류통지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고] 1부. 끝.

경기도교육감

★주무관

세입담당사무관

재무기획관

협조자

시행 재무기획관-원 () 접수 ()

우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 <http://www.goe.go.kr>

전화 031-249-0374 /전송 031-244-9841 /비공개(5.6)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우선입니다.



□ 예금 계좌에 대한 압류

- 처분 방법: 체납자 거래 은행(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통지 및 체납자에 대해 압류 통지*
* 체납자에 대한 통지는 위약“압류 통지서” 참고
- (작성예시) 예금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 압류 통지

형평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수신 **체납자 예금계좌 보유 금융기관(은행)**
(경유)

제목 **세외수입(변상금) 체납자 예금 채권 압류 통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외수입(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체납자 예금 계좌 압류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추심 및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압류 내역: [붙임] 압류통지서 참고
 - 나. 압류 일자: (문서 발송 일자)
 - 다. 입금 계좌: (추심금을 지급받을 계좌)
 - 라. 비고: 이 통지를 받은 후, 체납자에게 채무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 붙임 1. 압류조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고] 1부
2. 압류통지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고] 1부. 끝.

경기도교육감

★주무관

세입담당사무관

재무기획관

협조자

시행 재무기획관-☎ () 접수 ()

우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 <http://www.goe.go.kr>

전화 031-249-0374 /전송 031-244-9841 /sweetholiday@goe.go.kr /비공개(5,6)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우선입니다.

□ [참고] “채납자 재산 압류” 관련 Q&A

🔌 채납자에 대한 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 통상적으로 처분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 ▶ 단,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시부터 압류됩니다.

🔌 압류가 유효한 수단인가요?

- ▶ 실무상 매우 유용합니다.
 - (소멸시효 중단 효과) 압류가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 (유효한 채권 확보 수단) 채납자가 압류된 재산을 처분할 시, 채납액의 납부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 압류에 제한은 없나요?

- ▶ 일정 부분 제한이 있습니다.
 - 압류 금지 재산: 「지방세징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는 재산

- ▶ 채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 ▶ 채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 ▶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상 필요한 도장
- ▶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 ▶ 채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 ▶ 족보나 그 밖에 채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 ▶ 직무상 필요한 제복
- ▶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 ▶ 채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 ▶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 ▶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疾給與金)
- ▶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 채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급여 압류 제한: 「지방세징수법」제47조에 해당하는 범위

- ▶ 급여금 전액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중,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



5단계

공매대행 의뢰

- 압류 재산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하는 절차
 - (작성예시) 압류 재산 공매대행 의뢰



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압류재산 공매 대행 의뢰

1. 귀 기관의 우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매 대행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매 대행 요청사항
 - <채납자(주민등록번호/채납내역[건명(변상금 등...), 건수, 채납액], 공매의뢰물건>
- 붙임 공매대행 의뢰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 참고] 1부. 끝.

경기도교육감

★주무관 세입담당사무관 재무기획관

협조자

시행 재무기획관-☎ () 접수 ()

우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 <http://www.goe.go.kr>

전화 031-249-0374 /전송 031-244-9841 / 비공개(5,6)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우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채권 관리 업무 편람

4

채권 관리 사례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관리 사례는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실화를 기반으로 하나,
개인정보 보호, 안내 편의성 등을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 관리사례

사례 1 퇴직금(급여) 완수

◆ (0단계) 채권이 왜 발생하였나요?

- 교육공무직원 ○○○은 A고교에서 퇴직 시,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완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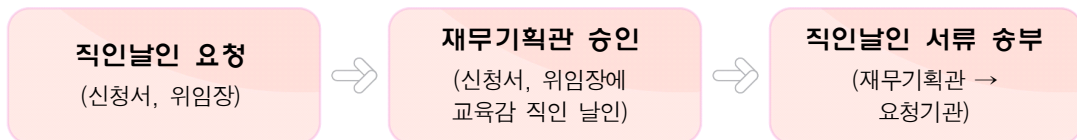
◆ (1단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인가요?

● 채권의 내용 파악

- 법원의 판결 부여가 있기 전까지 “급여 반환”은 **확정되지 않은 권리**입니다.
- 그래서 A학교에서는 “채권 확정”을 위하여 재무기획관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재무기획관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급부를 명하는 “간이한 민사재판 절차”**입니다.
- (A학교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의 대표자인 “교육감”의 명의로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신청서의 채권자를 “경기도(교육감: ○○○)”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 이 경우, 경기도교육청(재무기획관)에 “직인 날인” 및 “위임장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교육감 직인이 날인된 “지급명령 신청서”와 “위임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 원칙상 채무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의무이행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보정명령

- 법원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송부합니다. 단, “채무자”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정명령”을 합니다.
- 법원은 A중학교에서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채무자 주소”로 문서를 발송했으나, 문서가 반송되었기에, **A중학교에 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A중학교는 보정명령서를 인근 주민센터에 제시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 *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근거로 주소를 보정하여 제출

- 채무자 ○○○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이 인용되었고, “지급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이 결정된 순간부터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채권”이 된 것입니다.

* A중학교는 “지급명령”의 결정으로 채무자 ○○○에 대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획득한 것입니다.

◆ (2단계) 강제집행을 어떻게 하나요?

- 집행권원(지급명령 결정서)의 부여는 채권 강제집행에 있어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 소재 파악) 지급명령결정서(집행권원)는 강제집행 신청 서류와 결합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하는 근거가 됩니다.
 - (채무자 재산 파악)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 압류)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신분 변동)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재 파악) A중학교는 지급명령결정서에 기하여 인근 주민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초본”교부를 요구했습니다.
 - 이 때, 지참한 서류는 “집행권원(지급명령결정서)”과 “재산명시신청서”와 “위임장”입니다.
- (재산 조사)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라 채무자 ○○○의 최신 주소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 출석을 명령합니다.
 - 채무자 ○○○은 법원에 출석명령에 따라, 판사 앞에서 선서*한 후, 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
* 이 때,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감치 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결과 열람) A중학교는 채무자 ○○○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긴 하였으나, 압류 및 청산을 통해 실현할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낮아*, 다른 절차를 우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압류”가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절차가 있나 검토했다는 의미입니다.
실무 중, 압류가 가능하다면 즉시 압류하셔도 무방합니다.

◆ (3단계) 강제집행 절차 진행 중, 별도 조치할 사항이 있나요?

- A중학교는 채무기획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검토하였습니다.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 채무불이행 사실을 은행연합회,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조치로서 “간접강제”조치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마779 결정 참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시, 금융기관의 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채권 회수에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 채무자 ○○○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 그러자, 채무자 ○○○은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A중학교 측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 (4단계) 환수 후, 어떻게 처리하였나요?

- A중학교는 채무자 ○○○에게 “퇴직금”과 “송달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환수했습니다.
 - (도금고 납부) 해당 금액은 교육비특별회계 미수납액으로서 도금고에 납부했습니다.



사례 2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 완수

◆ (0단계) 채권이 왜 발생하였나요?

- 학생 ○○○와 법정대리인(모) △△△은 B중학교 체육 수업 중 학생 ○○○가 부상을 입었다며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학생 ○○○에 대한 부상에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경기도 승소, 원고(학생 ○○○ 및 법정대리인(모) △△△)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송비용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검토사항) 집행권원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 법원의 소송비용 결정문 그 자체는 집행권원으로서, 지급명령신청 등 별도 집행권원 확보 절차가 불요합니다. (대법원 1996 94마2190 결정 참고)
- 즉, “소송비용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즉시 개시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소송비용 납입을 요구하기 위해 고지·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

- B중학교[부임채권관리관: 학교장]는 소송비용 징수를 위하여 학생 ○○○와 법정대리인(모) △△△ (이하, 채무자들)에 대하여 소송비용 납입을 고지하였습니다.
- 채무자들은 “소송비용을 납입할 수 없다.”며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 B중학교는 재차 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
- (특이사항) 채무자들은 납입고지 및 독촉에 대해 B중학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민원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제86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 (2단계) 미납 상태가 지속되어, “재산명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고지·독촉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결정하였습니다.
- 소송비용 결정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의 명의로 채무자들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특이사항) 채무자들은 법원에서 “재산명시 재판출석명령”을 송달하자,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명시이의”재판*이 열렸고, 별다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 명시재판 지원을 위하여 재무기획관 업무담당자와 B중학교 업무담당자가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를 포기한다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강제집행이 불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산명시는 대체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무자들은 법원이 재차 발부한 출석명령에 따라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 (3단계) 간접강제조치로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 ① B중학교는 채무자들의 미납 상태가 지속되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한 신청*하였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권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법원은 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4단계) 재산명시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 ① 채무자 재산 파악을 위하여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에 의하여야 합니다.
단, 재산조회 신청은 “재산명시 신청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3회 이상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명시에 따른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민사집행법」제74조제1항]
- ② 채무자들이 제출한 재산은 압류에 적절하지 않은 소액금융재산이었으므로, 별도로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③ 재산조회 신청 결과를 열람하기 위하여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무자들의 재산을 자세히 확인하였습니다.
- 채무자 보험증권 5,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확인하였습니다.
- 그와 별도로 채무자 중 법정대리인(모)의 직장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 (5단계)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였습니다.

- ① 채무자들의 재산은 “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채권 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급여 채권: 법정대리인(모)의 급여
- 기타 채권: 보험증권, 전세보증금 등
- ② 급여채권에 대한 조치사항: 법정대리인(모)의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 신청
- ③ 기타 채권에 대한 조치사항: 전세보증금 수령인(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 신청

◆ (6단계) 채무자 측에서 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 ① 재산상 조치(채권 압류), 신분상 간접강제 조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에 따라 채무자들은 채무를 전액 상환하겠다고 연락하였습니다.
- ② 이에, B중학교는 수납 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 (도금고 납부) 해당 금액은 교육비특별회계 미수납액으로서 도금고에 납부했습니다.
- (채권현재액보고서 반영) 분기별 제출하는 “채권현재액보고서”에 소멸액으로 보고했습니다.
- ③ 또한, 채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해제에 동의하였습니다.



2 “처분에 의한 채권” 관리사례

사례 1 징계부가금 완수

◆ (0단계) 채권이 왜 발생하였나요?

- ◇◇공무원 ○○○은 징계처분에 의하여 “과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징계부가금은 공금 유용·횡령 등에 대하여 환수 조치 이외에 별도로 부과하는 금전 제재 처분으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납입 고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하, 체납자)은 납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1단계) 최신 주소를 조회하여, 체납자 소재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C교육지원청은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근 주민센터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요청하여 최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 최신 주소를 확인한 이유는 체납자의 현재 생활근거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2단계) 체납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재산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 C교육지원청은 체납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시청에 다음과 같이 재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 차량 소유 현황(차량등록사업소), 부동산 소유 현황(토지정보과)
- 그러나, 체납자 명의의 차량 또는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단계) 기관 보유 중인 체납자 재산 정보에 따라 예금 계좌를 압류하였습니다.

- C교육지원청은 자체 관리 중이던 “체납자 계좌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기관에서 자체 보관 중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체납자 계좌가 개설 중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통지하였습니다.
- 그러나, 체납자가 ○○은행 계좌 잔액이 소액임을 근거로 압류 해제를 요청하였고, C교육지원청은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63조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여 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 * 압류는 채권 소멸시효 중단 요건이며, 압류 해제시부터 채권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므로, 채권 소멸시효의 연장” 조치는 확보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4단계) 체납자의 추가적인 채권을 발견하여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 ④ C교육지원청은 압류 해제 이후 지속적으로 재산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재산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 ④ 그러던 중, 채권 소멸시효 종료 이전, 체납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 ④ 이에, 「지방세징수법」제36조에 따라 채무자의 직장에 “질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직장은 “채납자가 주주 또는 사인인 법인”에 해당하여 질문·조사 요구 대상입니다.
 - 이에, C교육지원청은 체납자의 급여내역, 추가 압류 사실 등을 회신하였습니다.
- ④ C교육지원청은 체납자의 직장(급여지급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 (5단계) 급여 채권 압류에 따라 월별로 체납액 납부 진행 중입니다.

- ④ C교육지원청은 월급여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최저생계비(185만원)을 제외한 급여액에 대하여 추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47조 참고)
 - 체납자는 채권자인 경기도교육청의 승인 없이, 월급여 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 시, 무효) 또한 이러한 의무는 제3채무자인 “체납자의 직장”에 대해서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 ④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시점부터 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일부 금액 납부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납부 시점부터 다시 5년을 기산합니다.



사례 2

변상금 완수

◆ (0단계) 채권이 왜 발생하였나요?

- ① □□□은 D고등학교 토지를 계속하여 무단점유하였습니다.
- ② D고등학교는 □□□의 무단점유 사실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 변상금 부과처분 실시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였습니다.
- ③ □□□(이하, 채납자)은 변상금 납부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D고등학교는 채납처분 실시를 결정하였습니다.

◆ (1단계) 생활근거지 파악을 위하여 채납자 주소를 조회하였습니다.

- ① D고등학교는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근 주민센터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요청하여 최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 ② 최신 주소를 확인한 이유는 채납자의 현재 생활근거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2단계) 채납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재산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 ① D고등학교는 채납자 소재지의 ○○○군청에 채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여부를 의뢰하였습니다.
- ② ○○○군청은 채납자의 부동산(토지) 소유 사실을 D고등학교에 회신하였습니다.

◆ (3단계) 채납자 소유 재산(토지)에 대하여 채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 ① D고등학교는 채납자 소유 재산(토지)에 대하여 채납처분 및 강제집행 실시를 결정하였습니다.
- 채납자 소유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열람하였습니다.(재산 세부내역 확인)
- ② (사전고지) 채납처분 실시 전, 채납자에 대하여 채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임을 사전고지 하였습니다.
이 때, 의견 제출도 안내하였습니다.
-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채납처분을 면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③ (압류 처분) D고등학교는 채납자 소유 토지 소재지의 등기소에 “토지 압류 등기”를 촉탁하였고, 그 결과가 반영되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가 채권자로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4단계) 체납처분 절차 진행 중, 체납자가 사망하였습니다.

- D고등학교는 재산(토지) 압류로서, 소멸시효 진행 중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하기 이전, 체납자에 대하여 납입고지·독촉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체납자가 사망하였습니다.

◆ (5단계) 그러나, 재산이 상속(또는 유증)되어도 체납처분은 가능합니다.

- (유사 사례) 국세징수법 해석에 있어서, 국세청은 “압류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국징, 징세46101-2772(1998.10.2.)]
- 이 사건 체납자의 상속인은 상속 개시와 더불어,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해당 처분은 “학교회계”로 수납받아, 체납액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3 | 기타 특이사례

사례 1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요청

◆ 사건 개요

- P초등학교는 소송비용 징수를 위하여 집행권원인 “소송비용 결정문”과 “강제집행 서류 (재산명시 신청서 및 위임장)”를 B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 B주민센터의 직원은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서”가 없다며 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해결 사례

- 이 사건 관련, 관련 지침과 규정에 따라 B주민센터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조문을 해석한 내부 지침에서도 “집행권원”과 “강제집행신청서”를 구비한 경우 교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소송비용 결정문”이 집행권원에 해당하며, “재산명시신청서 및 위임장”이 강제집행신청서에 해당
- 즉, 별도로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참고]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발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증명자료**

-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하는 문서
-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신청서와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인의 공정증서 등】
- ※ 강제집행 신청의 종류

재산명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강제경매, 강제관리),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경매, 압류명령, 전부명령, 추심명령,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동산인도청구,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경매신청
- ※ 집행권원이 있는 자료

확정된 종국판결문,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문, 소송상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 등

□ **교부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집행권원 + 집행불능조서(강제집행신청서를 대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가능】
- 법원에 접수된 공탁신청서 + 이해관계자료
(법원에 접수를 해야 비송사건으로 인정)
-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 명백한 이해관계사실 자료(판결문 또는 공증인의 공정증서 등만 인정)
- 임의경매신청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위임장(위임사)
- 판결문 + 승계집행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승계집행 : 원고가 피고에게 주어진 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
- 공사승달신청서 +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조치 내역 + 소송진행증인을 증명하는 서류

사례 2

재산명시 이의신청

◆ 사건 개요

- ① E중학교는 □□□(이하, 채무자)에게 소송비용 납부를 고지·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소송비용 납부를 거부하며 E중학교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E중학교는 고지·독촉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를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 ② 분기별 채권현재액보고서에 따라 본청 총괄부서(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은 E중학교에 재산명시 등 재산조사와 강제집행을 권고하였습니다.
- ③ 이에, E중학교가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하자,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명시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산명시 이의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재판 진행

- ① 경기도교육청 주장
 - (소멸시효) E중학교에서 고지·독촉 이후에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유보하였으나, 본청 총괄부서(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권고 이후 재산명시를 진행하는 시점은 소송비용 채권 소멸시효(10년) 이내였음.
 - (채권관리) E중학교는 강제집행 절차를 유보하면서도 분기별로 본청 총괄부서에 지속적으로 채권 현재액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채권으로서 인지하고 있었음.
- ② 채무자 측 주장
 - “강제집행의 유보”는 “채권의 포기*”임.
* (참고) 채권자가 채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채권 회수 절차로서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권한 또한 상실할 수 있음.
- ③ 재판 결과
 - 채무자 측의 주장에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를 명령하였으며, 명시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시사점

- ① 채권의 적극적인 행사 요망
 - 채권자의 자의적인 징수유예 등은 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로 자의적으로 “채권을 면제한다.” 등의 결정 금지*
*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의 효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채권 관리 부서(기관)에서 임의로 채권을 면제하는 경우,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 ② 적극적인 정보 공유 요망
 - “재산명시 이의신청”은 이례적인 경우로서, 초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특이사례 발생 시, 관련 부서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유선 등으로 정보 공유 실시



사례 3

채권 부적정 관리에 따른 채권 소실(消失) 사례

◆ 사건 개요

- F교육지원청은 소송사무 종결 후 △△△에 대해 “소송비용 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하, 채무자)가 납입 고지·독촉에도 납부하지 아니하자, F교육지원청은 甲시청에 채무자 재산조사(부동산, 자동차)를 의뢰하였습니다.
- 甲시청에서 채무자의 자동차 보유 내역을 회신하였고, F교육지원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 등기를 촉탁하여 압류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 그 이후, 해당 압류 처분은 “무효”로 결정되었고, 채권은 소실되었습니다.

◆ 사건 분석

- 소송비용 채권은 “민사채권”으로, 「민사집행법」 등에 의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F교육지원청의 채권 확보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절차로서, 「지방세징수법」 등의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압류는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F교육지원청이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해당 압류는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인 것입니다.

◆ 시사점

- 민사채권과 세외수입채권 모두 “금전의 수납”으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발생 원인, 회수 절차 등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그 분류를 정의하고, 그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 4

신용정보조회시스템 활용 사례

◆ 사건 개요

- G교육지원청은 소속 공무원 ◆◆◆(이하, 체납자)에게 “징계부가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납입고지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해당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G교육지원청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G교육지원청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소유현황 및 자동차 보유 현황을 요청하였으나, 회신 사항에 체납자 소유의 별도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G교육지원청은 분기별 재산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체납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청 출납부서(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와 협의하여 신용정보조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 본청 출납부서에서는 요청받은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G교육지원청에 보고서 열람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G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자는 해당 보고서를 열람하였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고서 1부를 복사하였습니다.
 - 열람 결과: 직장정보(재직처), 신용카드·CB카드 개설정보, 주거래금융기관추정정보(은행 및 상호 금융) 등
- G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자는 열람 결과에 따라 추정 직장 및 주거래금융기관에 질문·조사권을 활용하여 급여정보 및 계좌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 직장 및 주거래금융기관에서 체납자의 급여정보 및 계좌정보를 회신하였으며, 업무담당자는 직장 및 주거래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설정하여 체납자의 급여 및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통지하고 이를 추심하였습니다.

◆ 시사점

- 징계부가금, 변상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채권은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입 고지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재산조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의 저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한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조회가 아닌 체납자의 직장 및 계좌정보는 기관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없는 이상 이를 조회하여 압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 채권 보유 기관(부서)에서는 필히 분기별 재산조사를 통한 압류 가능 재산을 조회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압류 가능 재산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본청 총괄부서에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요청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 제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5

제3채무자 급여 압류 사례

▶ 이번 사례는 “민사채권” 및 “세의수입채권”에서 같이 참고하셔도 됩니다.

◆ 사건 개요

- 경기도교육청은 ☆☆☆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 * 예금 채권의 압류는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하, 채무자)가 압류된 계좌 중엔 “급여 계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채무자는 예금계좌의 압류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자, 직장에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추가조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개선 사례

-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경우, “신청 취지” 부분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기재합니다.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시에도 “채권 압류 통지 이후,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된다.”고 고지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채권 압류 통지서’]
- 즉, 채무자의 급여가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채권”을 추가로 압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채권 관리 업무 편람 개정판



<초판>

발행일자	2021년 12월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집필자	재무기획관 세입담당(오상택)
편집위원	재무기획관 세입담당(이진명, 이진주, 김선임, 장민지, 나지영)
감수	재무기획관 세입담당사무관 김향숙

<개정판>

발행일자	2022년 12월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집필자	재무기획관 세입담당(정기열)
감수	재무기획관 세입담당사무관 김향숙

* 본 내용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자율 균형 미래

새로운 경기교육

채권 관리 업무 편람

개정판